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박 순 호**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born Adoptees in Europe*

Park, Soon Ho**

요약: 한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는 주요한 연구대상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입양아의 해외입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유럽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 이어 해외입양아의 비중이 큰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를 대상으로 유럽 내 공간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럽으로의 한국 해외입양은 1956년 노르웨이로의 입양이 그 시초이나,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 197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그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은 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였던 제1기(1956~70년)의 주된 입양 대상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북부유럽 국가들이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가 중심인 제2기(1971~90년)에는 북부유럽 외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서부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상국가가 1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고 그 수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 미혼모 자녀가 주된 입양 대상자인 제3기(91년 이후)에는 한국입양아의 절대 수도 감소하였고 대상국가도 북부유럽 국가와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한국입양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양아의 성별은 과거에는 여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성비가 역전되었으며, 연령도 점차 낮아져 대부분 1세 미만이다.

주요어: 해외입양, 한국입양아, 지역분포, 입양정책, 유럽

Abstract: Research on intercountry adoption was strongly needed in Korea; however, there were only a few research in geography on the United States. It is hard to find the geographical research on Korea-born adoptees in Europe. This research analyzed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born adoptees in Europe where adopted the largest number of Koreans after the United States. Since 1956 when Korea-born children were first adopted in Norway, the number of adoptees had increased rapidly until 1978. In the early 1970s, Korean children had adopted more in Europe tha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the number of intercountry adoptees temporarily decreased after the Seoul Olympic in 1988, Korean children have been still adopted at a settled numbers. In the beginning period (1956~70) of adoption in Europe, the Korean war orphans and abandoned children were adopted by Sweden, Norway and Belgium. In the second period (1971~90), the number of Korean adoptees were social orphans as a result of rapid industrialization. The number of adoptees increased rapidly and their destination extended into ten countries including the Western Europe such as France, Germany, Italy and United Kingdom. In the third period after 1991, the adoptees were mainly from unmarried mothers. The number of adoptees decreased as the result of that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reduce the intercountry adoption and to increase the domestic adoption. Their destination reduced into Northern European countries, France and Luxemburg. Those countries kept adopting settled number of Korean children. Female Korean adoptees used to outnumber male Korean adoptees; however the sex ratio was reversed recently. The age of adoptees became to lower, so most of Korea-born adoptees were under one-year old.

Key Words: Intercountry adoption, Korea-born adoptee, spatial distribution, adoption policy, Europe

1. 머리말

입양의 역사는 가족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다(박인신, 1994). 그러나 해외입양은 과거에는 단지 몇몇 국가 간의 문제이었으나, 21세기 현재에는

약 100여개 국가 간에 매년 약 30,000명이 입양되고 있는 전지구적 차원의 보편적인 현상이다(Peter Selman, 2000). 더욱이 한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왔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해외입양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 본 논문은 2005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ea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hpark@dnu.ac.kr)

고아와 미아에 대한 구제책으로 시작되었으며, 1953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입양아를 보내는 국가이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와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외 입양자 수가 한국을 능가하였지만(Peter Selman, 2000),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주요한 연구대상국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Mary Kathleen Benet, 1976; 박순호, 1998; 정성덕,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에 대한 연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이유는 우선 입양 그 자체가 매우 사적이고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관계로 자료구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박순호, 1998).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료구득의 문제 이외에 해외입양을 “외국에 아이를 팔아먹는다”라는 관념에서 국가적인 수치심에서 연구대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 집과 해외입양이 한국전쟁고아와 혼혈아로부터 시작되어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되새기고 싶지 않으며, 산업화 이후 해외입양대상자의 대부분이 미혼모에 의한 기아인 점에서 성도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 등 한국사회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요인도 해외입양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박순호, 1998; 전경수, 1995). 이러한 연구도 대부분 입양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전망(Howard Altstein & Rita J. Simon, 1991; Mary Kathleen Benet, 1976; Van Loon, 1990; 원영희, 1990; 이준우 외, 1994; 허남순, 1986)과 입양아의 적응(Whang, 1976; Feigelman and Silverman, 1983; Altstein and Simon, 1991; Textor, 1991; 허남순, 1984)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해외입양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로는 Weil(1984)와 박순호(1994, 1995, 1998)의 연구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들 연구도 모두 미국 내 한국입양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해외입양의 주된 대상국은 전체 입양아의 약 67%를 차지하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전쟁 등을 통하여 맺어진 양국 간의 관계와 「난민구제법(Refugee Relief Acts)」과 「고아법(Orphan Bills)」 등의 제도에 기초하여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미군 혼혈아와 고아를 적극적으로 입양함으로써

써 1962년까지의 초기 해외입양의 99%를 차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대표적인 한국 해외입양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하여 왔다. 반면에 미국 다음으로 전체 해외입양아의 3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해외입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입양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입양기관의 역할과 입양정책을 살펴보고,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를 대상으로 유럽 내 공간분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된 자료는 홀트아동복지회(Holt)의 미공개 보관 자료이다. 왜냐하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입양에 관한 자료는 보건사회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가별 입양자수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2. 한국 해외입양의 제도적 환경: 해외입양기관과 입양정책을 중심으로

해외입양아의 대부분은 나이가 어린 미아 내지 고아로, 입양아 스스로가 언제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이주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즉 일반 이민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Peterson(1975)에 의하면 해외입양은 16~17세기에 아프리카에서 강주 이주된 노예와 같은 소위 “강제 이주(Forced Migration)” 유형에 속한다. 왜냐하면 입양아의 이주시기, 이주절차 및 방법 그리고 입양과정 즉 목적지가 해외입양기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입양기관은 입양을 원하는 부부에게 어느 나라에 그들이 원하는 입양대상아가 있고 어떻게 입양가능한가에 대한 각 나라의 입양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실제 입양에 관계된 사무 처리와 법적 절차에 깊이 관여하므로 해외입양에 있어서의 입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절대적이다. 특히 미국 내 한국입양아의 입양부모의 90%이상이 한국입양아의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입양프로그램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들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입양아를 입양해준 미국 내 해외입양기관에 고마워하고 있다(Park, 1994)는 점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박순호(1995)는 입양기관의 역할을 입양아의 지역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입양의 시·공간적 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 해외입양의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milieu)으로서의 해외입양기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입양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 내 해외입양기관의 기능과 역할

입양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친부모와 자식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고 대신에 혈통에 의하지 않는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다(정성덕, 1997).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제도는 1961년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아입양 특례법이 최초이다. 이를 기초로 1976년 12월에는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된 뒤, 가장 최근에는 2005년 3월 31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입양(알선)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1954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입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1956), 한국사회봉사회(1954), 대한사회복지회(1964), 동방아동복지회(1972)의 4개 기관이다. 한국정부는 해외로부터 입양수요가 증가하던 1960년대 후반부터 한국 해외입양아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인차원의 입양을 금지하고 국내 4개 해외입양기관과 상대국의 연계기관을 통한 해외입양만을 허용함으로써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현재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룩셈부르크, 대한사회복지회는 미국, 스웨덴, 캐나다, 동방아동복지회는 미국과 호주, 그리고 한국사회봉사회는 미국과의 입양협약을 맺고 있다. 즉,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이다.

다음은 입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입양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 내 입양기관은 병원, 아동보호시설, 그리고 미혼모 등으로부터 입양대상자들을 받아들여 이들이 입양되어 떠나기 전까지 위탁가정이나 입양기관 부속 병원에서 양육하면서 이들의 성장과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거나 친부모가 신분 노출을 꺼려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대표자가 법적 보호자가 되어 호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입양부모를 평가한 입양대상 국가의 입양기관의 추천서와 정보를 기초로 입양대상자의 입양부모를 결정하고 입양대상자의 사진과 사회적 배경과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을 상대국의 입양기관으로 보낸다. 입양대상 부모로부터 최종 입양을 결정 받으면 보건사회부에 이주허가를 신청한다. 그리고 이주가 허가되면 여행증명서와 비자를 발급받아 입양대상자를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입양이 끝나면 입양아와 입양부모의 적응보고서와 입양대상국에서의 법적인 입양종결서류를 해외입양기관으로부터 접수하는 것으로 해외입양 절차는 일단락된다. 한편 입양대상 국가의 입양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물론 개별 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입양아 프로그램과 입양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국의 입양부모가 한국입양아를 입양하는 과정과 입양후서비스(post-placement service)에도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대상국 입양기관의 입양과정에서의 역할은 사전조사(inquiry), 예비신청(preliminary application), 정식신청(formal application), 가정조사(home study), 입양아조회(child referral)와 입양후서비스(placement service)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조사과정에서 해외입양을 원하는 예비입양부모에게 예비신청서와 함께 각 국가별 입양부모의 요구조건, 비용, 입양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입양기관들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입양아의 입양을 권장한다. 예비신청서를 받으면 입양조건을 심사하여 통과된 입양부모에게 신청서와 함께 가정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박순호, 1998). 가정조사의 내용은 입양의 동기, 가족의 도덕성, 결혼생활상태, 건강 그리고 부모가 될 준비상태 등으로 이를 통해 입양의 가부가 결정된다.

가정조사가 끝날 경우 한국입양기관에 입양대상자를 조회하여 입양대상자가 결정되면 입양대상부모에게 입양인의 사진과 사회적·의학적 이력(social and medical histor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입양대상부모가 합당한 이유 없이 결정된 한국입양대상아를 거절하면, 그 부모는 다시는 한국 어린이를 입양할 수 없다. 입양대상아 조회가 끝나면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의 비자신청과 같은 사무 처리와 법적 절차에도 관여한다. 입양이 법적으로 종결되고 한국입양아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입양기관은 법적인 절차를 입양가족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입양이 완료되면 그 사실을 한국의 입양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입양과정상의 기능 외에 대상국의 입양기관은 입양부모가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토론하는 프로그램, 한국문화프로그램, 여름캠프, 그리고 소풍과 크리스마스파티와 같은 사회적 행사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입양부모에게 입양아의 육아에 관한 강의, 현재 진행 중인 입양의 문제점, 그리고 입양아의 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Park, 1994).

2) 유럽의 해외입양 정책

서부 유럽국가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으로의 해외입양의 주된 송출국이었으나 현재는 해외입양대상국으로 그 위치가 반전된 반면에 동부유럽은 세계적으로 대표적 해외입양 송출지역이다.

이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유럽을 둘러싼 해외입양의 급격한 증가와 해외입양에 관한 관행의 남용 그리고 빈번한 입양실패로 해외입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은 1989년 11월 20일의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정의 규정을 실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1988년 헤이그컨퍼런스에서 해외입양에 관한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ssion on Intercountry Adoption)가 설치되었다. 그 후 5년 간 이 위원회에는 65개 국가, 6개 국제 조직과 11개 NGO단체가 가입하였다(Duncan, 1993).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93년 5월 29일 66개국 대표들이 어린이들의 보호와 해외입양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초안에 동의하였고, 1995년 5월 1일 헤이그협정이

체결되었다. 헤이그협정의 핵심은 협정에 비준한 국가는 입양 대상국이나 송출국 모두 일방적인 수단으로 해외입양을 규제할 수 없으며, 합의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유럽국가들은 해외입양에 대한 헤이그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반면에 라틴권 국가들과 독일 및 영국은 최소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 송출국의 경우에도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해외입양을 현재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해외입양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해외입양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Peter Selman, 1998).

이와 같이 유럽 내에서도 해외입양 대상국과 송출국을 막론하고 국가 간에는 해외입양 정책이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유럽 내 우리나라 해외입양아의 주된 입양대상국의 입양아 조건, 입양부모 조건, 입양 절차에 대한 해외입양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표 1>를 보더라도 각 국가 간의 차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입양아에 대한 조건은 국가마다 약간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덴마크는 18세 미만, 프랑스는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연령폭이 크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입국 당시 6세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입양아 송출국에 따라 연령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스웨덴은 자국에서 특정한 기준을 정하지는 않고 송출국에서 입양절차를 거친 아동만을 입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부모의 조건도 국가마다 세부적으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로 한정하고 있으나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는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한국아동을 입양하려는 부모에 대해서는 입양부모가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만이 가능하다는 특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 절차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입양자 및 가족에 대한 가정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네덜란드는 법원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지방법원에 청원을 통해서만이 입양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행정상의 절차와 사법상의 절차를 동시에 거쳐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유럽의 각국별 해외입양 정책

국가	입양아 조건	입양부모 조건	입양 절차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한 지 2년 6개월 이상 된 부부가 함께 입양 가능 · 25세 이상 ·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가 40세를 넘지 않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자로서 자격여부에 대한 질의 · 입양 전 상담 과정 · The Joint Council 직원과의 1회 이상의 인터뷰 · 입양자에 대한 가정조사 보고서 요구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미만 - (예비)입양자의 가정에서 6개월 이상 동거한 아동 - Ordinary adoption의 대상 · 15세 이상: 미성년자와 18세가 된 후 2년 이내에 한해 Plenary adoption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가 둘 다 28세 이상이 아니라면 결혼한 지 2년 이상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 사람 · 독신자는 28세 이상 · 입양부모는 아동보다 15세 이상 많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상의 절차 - 거주지역의 the Hand of District Council에 입양 요청 - the Child hood Social Services가 입양신청자에게 정보 제공 - 신청자가 아동일 경우 출생증명서와 가족 기록 사본, 전과기록 사본, 건강진단서, 재산 증명 서류와 함께 신청 - the District Council의 기관과 인터뷰 - The Assent Committee가 입양신청자의 입양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 신청등록 후 9개월 이내 승인/거절통보 · 사법상의 절차 - 아동이 15세 미만일 경우, 해당 거주지 The local District Court에 the Procureur de la Republique에게 공식적인 입양 명령 요청, 요청 검토, 승인/ 거절 통보, 신청자·Procureur de la Republique· 결정을 통보받은 제3자가 15일 이내에 법원의 판결에 항소가능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당시 6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의 부부 · 독신자 · 42세 미만 ·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가 40세를 넘지 않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승인: 아동의 송출국에서 내려진 입양명령이 인정이 된다면 네덜란드 법원에 의한 결정은 불필요 · 동의: 신청자는 친부모가 아동을 포기했다는 것을 기록에 의해 증명해야 함 · 입시승인: 아동의 송출국에서 내려진 입양명령이 인정이 된다면 1년 또는 3년간 신청자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고 교육시키지 않아도 됨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마다 상이하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한 지 2년 이상 된 부부 · 45세 이하 · 한국아동에 대한 특별 조건: 입양부모가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승인 신청 · 보고서: 입양가족에 대한 가정조사 인터뷰, 해외입양을 원하는 동기 등에 관한 개요와 사회복지사의 소견 등으로 구성된 보고서 작성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국에서 법적 입양절차를 마친 아동만이 입양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세 이상 · 친부모가 입양을 승인하여야함 · 결혼한 부부는 공동으로만 입양가능, 법적으로 인정된 동성부부도 함께 살고 있다면 공동으로 입양가능 · 독신도 입양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입국하는 즉시 the Local Social Welfare Authority에 보고 · 입국 후 정식절차를 마칠 때까지 가족은 사회복지기관의 감독 하에 있음 · 아동의 송출국에서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스웨덴에서 유효한 입양명령을 받기 위해 Swedish National Board for Inter-country Adoptions에 보고 · 아동이 송출국에서 입양된 것이 아니라면 입양부모가 스웨덴 지방법원에 청원에 의해 입양을 신청해야 함

자료: 『국의 입양인 백서』, 2006, 재외동포재단

주: 『국의 입양인 백서』(pp.471-499)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필자가 재구성.

이러한 해외입양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헤이그협정의 비준에 참여한 국가의 중앙정부는 해외입양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비교적 해외입양의 비율이 높은 독일과 이탈리아도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에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수집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해외입양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송출국의 해외입양 자료는 입수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루마니아의 정확한 통계는 누구도 입수할 수 없다.

3. 한국의 해외입양에 있어서의 유럽의 위치

해외입양은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질병과 같은 위기를 맞은 국가들이 모든 어린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수천 명의 고아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유럽 전쟁고아는 주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비롯한 유럽 내 국가와 미국으로 입양된 반면에 일본과 한국의 전쟁고아는 주로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박순호, 1998). 그러나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나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후에도 한국의 해외입양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해외입양 대상국도 미국 중심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1958~1968년의 전체 해외입양자는 6,677명이었고, 그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89.9%이었다. 그러나 1969~1975년에는 전체 해외입양자 24,404명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51.9%로 낮아진 반면에 유럽의 비율은 47.5%로 높아졌다(재외동포재단, 2006).

이와 같이 해외입양은 일반적으로 전쟁이나 높은 출산율 등으로 인한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입양의 주된 원인은 반드시 가난과 높은 출산율인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이다(Peter Selman, 2000). 이와 같이 해외입양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해외입양의 추이와 그 중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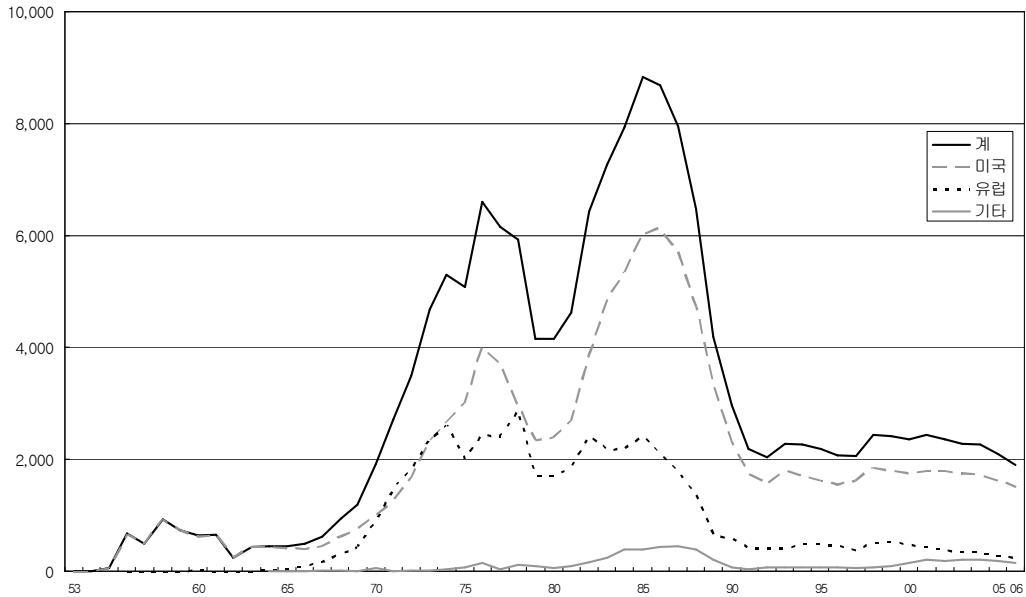
한국의 해외입양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와 혼혈아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1953년에 처음으로 4명이 입양되었고, 1954년에는 8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입양과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지 못하여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해외입양이 이루어졌다. 이에 1955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안되어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입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1956년에는 671명으로 크게 늘어남으로써 해외입양이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후 1957년에는 486명으로 약간 줄었으나 1958년에는 930명으로 늘어났다(재외동포재단, 2006). 이와 같이 급속하게 늘어나던 해외입양자수는 1958년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60년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1976년에서 1980년까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기간이 있었다. 이는 1975년 12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보호시설수용아동의 국내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노력의 결과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하였으나 1987년을 고비로 다시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1970년대 초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입양대상자 자체가 감소한 결과이기보다는 해외입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의 결과이다. 즉 1988년 올림픽경기를 치를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대 해외입양국가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대내적으로 해외입양에 대하여 자성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9년9월 보건복지부는 '입양사업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까지 해외입양을 1,700명으로 줄이고 반면에 국내입양을 3,500명으로 늘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나아가서 국내입양기관을 지정하고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1996년부터는 혼혈아나 장애아동을 제외한 해외입양을 전면금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의 국내입양자는 1,025명(32.0%)인 반면에 해외입양자는 2,180명으로 전체의 68.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과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의식전환으로 1995년 이후 국내입양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해외입양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 한국입양자의 국내·외 입양자 비중의 추이

(단위: 명,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	1,025 (32.0)	1,229 (38.3)	1,412 (44.1)	1,426 (44.5)	1,726 (53.9)	1,686 (52.6)	1,770 (55.2)	1,694 (52.9)	1,564 (48.8)	1,641 (51.2)	1,461 (45.6)	1,332 (41.6)
국외	2,180 (68.0)	2,080 (62.9)	2,057 (59.3)	2,443 (63.1)	2,409 (58.3)	2,360 (58.3)	2,436 (57.9)	2,365 (58.3)	2,287 (59.4)	2,258 (57.9)	847 (36.7)	1,899 (58.8)
계	3,205 (100.0)	3,309 (100.0)	3,469 (100.0)	3,869 (100.0)	4,135 (100.0)	4,046 (100.0)	4,206 (100.0)	4,059 (100.0)	3,851 (100.0)	3,899 (100.0)	2,308 (100.0)	3,231 (100.0)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그림 1. 한국 해외입양아의 추세(1958~2006)

하고 2006년 현재에도 해외입양자는 1,899명으로 58.8%를 차지하는 반면에 국내입양자는 1,332명(41.6%)에 지나지 않는다(표 2).

1953년에서 2006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입양아가 약 159,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비율이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유럽이 29.6%, 그 외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등의 기타 국가가 약 3.4%를 차지한다(그림 1).

즉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1950년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발생한 혼혈아와 고아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대가족제도의 기

능약화 그리고 미혼모의 증가로 입양대상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을 국내에서 양육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으로 이러한 사회적 고아문제를 해결책의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한국의 해외입양아의 흐름 속에서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는 1956년부터 2006년까지 11개 국가에 47,389명이다.

다음은 유럽으로의 입양추세를 3시기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시기는 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였던 제1기(1956~70년),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를 중심으로 해외입양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제2기(1971

~90년), 해외입양 중심에서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입양사업 개선계획' 정책을 실시한 이후의 제3기(1991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제1기에는 1,963명(4.1%), 제2기에 38,827명(81.9%), 제3기에 6,599명(13.9%)이 입양되어 제2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처음 해외입양을 시작할 당시에는 가난하고 출생률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현재에는 교육수준도 매우 높고, 부유하며 출산율도 세계적으로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입양이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국내 상황 외에 서구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950대 후반부터 피임이 일반화되고 미혼모의 법적지위가 개선되어 비전통적 가족(non-traditional families)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다. 따라서 미혼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백인 영아의 입양대상자가 감소하게 되어, 이인종간의 입양(transracial adoption)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해외입양대상자에 대한 수요 확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과 우리나라 간의 해외입양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 외에 한국의 적극적인 입양정책에 기초한 해외입양기관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도 해외입양이 늘어나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박순호, 1998).

2006년 현재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별로 입양실태를 보면, 홀트아동복지회가 5개국 779명을 입양하였고, 그 중에서 유럽으로의 입양아는 156명으로 약 20%를 차지하며, 대한사회복지회는 전체 449명 중에서 유럽으로는 스웨덴에 90명을 입양하였다(보건복지부, 2006).

4. 유럽 내 한국입양아의 공간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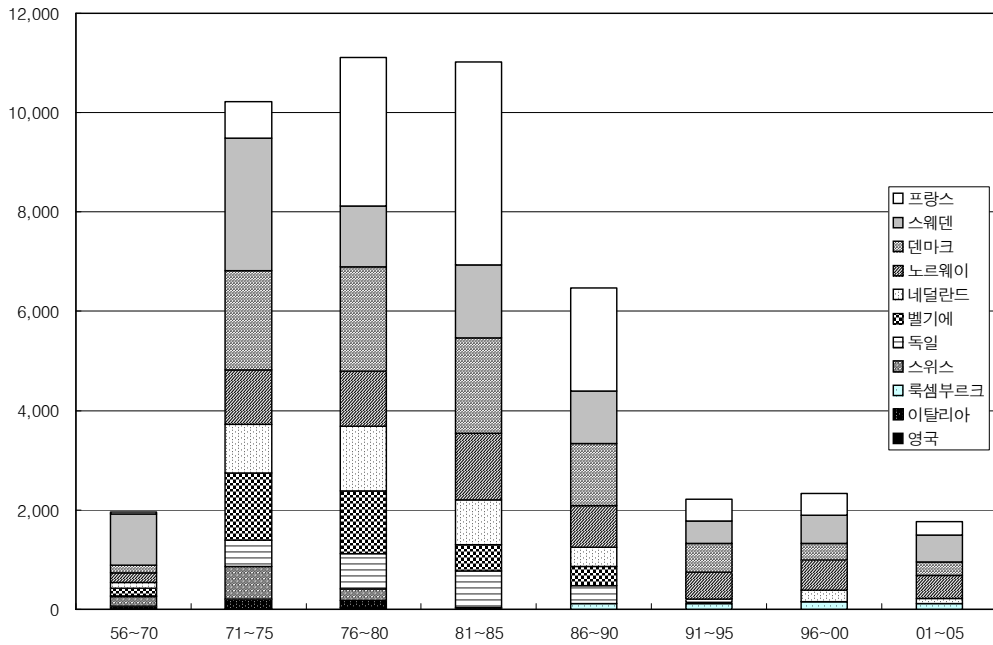
1) 유럽 내 한국입양아의 국가별 추이

유럽으로의 한국 해외입양은 1956년 노르웨이로 3명이 입양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71~1973년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1975년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 후 다시 증가하여 1978년에 2,868명으로 최고치

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전체 해외입양아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유럽으로의 입양자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매년 300~400명이 유럽으로 입양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으로의 해외입양 추이를 앞에서 제시한 3개 시기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까지 전쟁고아 중심의 해외입양 초기인 제1기에 유럽으로 입양된 입양아는 총 1,963명이다. 주된 입양 대상 국가는 스웨덴(52%), 스위스(10.4%), 노르웨이(9.9%), 벨기에(8.0%) 등으로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부유럽 국가들이다. 그 후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빈곤 및 결혼사정과 미혼모의 자녀 등 이른바 사회적 고아가 주요한 해외입양대상아들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입양되는 제2기에는 그 수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그리고 입양대상국가도 북부유럽 외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서부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1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 간에도 입양자수 뿐만 아니라 시기별로도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찍부터 한국의 입양아를 받아들였던 북부유럽 국가와 프랑스는 현재까지도 절대 수에 있어서는 감소하였지만 일정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스위스, 영국, 이태리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에는 거의 입양이 중단된 상태이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벨기에와 독일도 1990년대 이후에는 입양아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전체 11개국 중에서 가장 늦은 1983년에 처음으로 3명이 입양하였으나 그 다음해에 22명으로 늘어난 이후 꾸준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2).

현재까지 유럽에서 한국입양아의 입양비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으로 제2기의 비율이 높다. 제2기 이후 유럽 대부분 국가의 한국입양아의 절대 수는 감소하였으나, 이들 국가는 한국입양아를 지속적으로 입양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룩셈부르크는 제2기보다 제3기에 한국입양아 수가 증가한 유일한 국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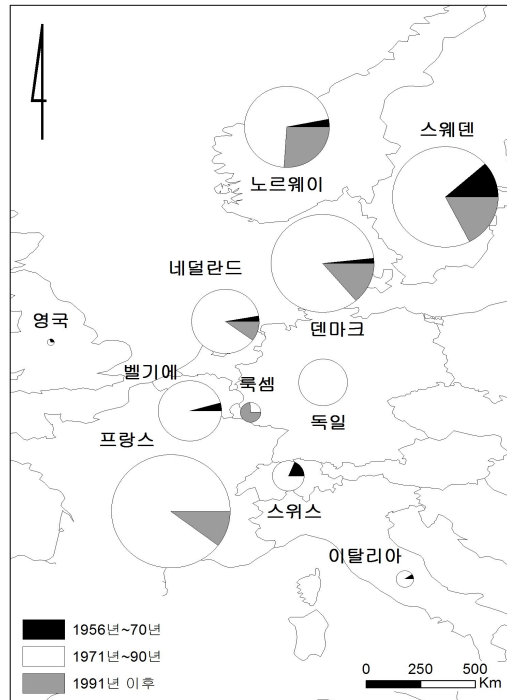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그림 2. 유럽 내 국가별 한국입양아 추이(1956~2005)

2) 유럽 내 한국입양아의 국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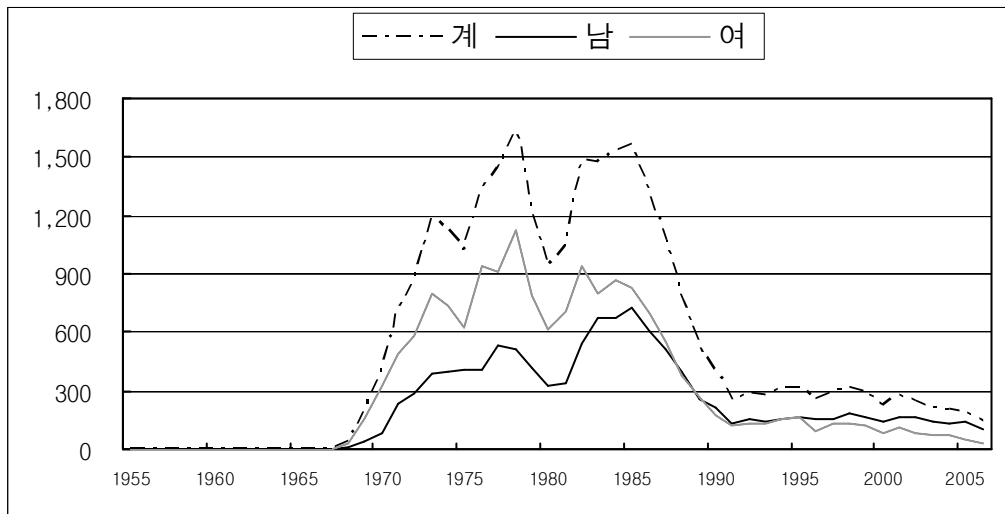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2006년 현재까지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의 국가별 분포특성을 해외입양의 성격과 관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입양아의 지역 분포는 입지계수(LQ)를 이용하면 각 국가별 전체 입양아 중에서 한국 입양아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 특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해외입양 관련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지계수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한국입양자의 총 수와 시기별 비중, 그리고 제한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입양자의 성격을 중심으로 국가별 분포 특성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유럽에서 한국입양아를 가장 많이 입양한 국가는 프랑스로 2006년 현재까지 11,077명(23.5%)을 입양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스웨덴으로 9,011명(19.1%), 덴마크 8,617명(18.3%), 노르웨이 6,164명(13.1%), 네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그림 3. 유럽 내 한국입양아의 분포



자료: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

그림 4.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의 성별 추이(1956~2006)

덜란드 4,099명(8.7%), 벨기에 3,697(7.8%), 독일 2,352 (5.0%), 스위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순이다.

사회복지제도가 일찍부터 정착된 북유럽국가와 프랑스는 미국 이외에 한국해외입양아의 비율이 높은 곳이다. 특히 북유럽국가들은 국내 인구대비로 볼 때 그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1907년 스웨덴, 영국은 1926년, 프랑스는 1928년에 양자법이 제정되었다(정성덕, 1997).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고아를 친척위탁보호 형식으로 해외입양을 시작하였고, 1950년대 말에는 개인입양을 1960년대 중반부터 국가 간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해외입양을 하게 되었다. 지난 40여 년에 걸친 해외입양은 국내입양을 포함한 입양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다. 즉 입양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인 인식이 확대되어 입양아도 비입양아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고 대우도 동일하다.

3) 국가별 한국입양아의 성격

한국입양아의 성격에 관한 자료는 현재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입양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가장 전통이 깊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입양대상을 해외에 입양하고 있는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였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006년까지 유럽으로 입양된 전체 한국입양자의 53.9%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의 2006년에는 유럽으로의 입양이는 156명의 63.4%를 차지하여 통계적인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유럽에 입양된 한국입양아의 성별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제1기의 남녀성비는 19.6%대 80.4%이고 제2기는 39.0%대 61.0%이나 제3기는 58.8%대 41.2%로 성비가 역전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까지 즉 전쟁고아나 기아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고아가 주류를 이루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아가 해외입양의 주된 대상자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해외입양대상자의 주류가 되었으며, 남아선호사상도 많이 약해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입양아의 입양대상국 모두가 제1기와 제2기에는 여아의 비중이 크고, 제3기에는 남아의 비중이 크다. 즉 유럽전체의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비율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기의 남아비율이 26.5%로 가장 높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북유럽국가들의 경우에 제1기에서는 남아의 비중이 10%대, 제2기는 30~40%내외 그리고 제3기에서는 6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의 연령별 구조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제1기에 1세

표 3. 유럽 내 국가별·시기별 한국입양아의 성별 추이

(단위: 명, %)

구분	계	남	여
프랑스	제1기	83(100.0)	61(73.5)
	제2기	9,763(100.0)	5,476(56.1)
	제3기	1,096(100.0)	465(42.4)
	소계	10,942(100.0)	6,002(54.9)
노르웨이	제1기	87(100.0)	76(87.4)
	제2기	4,388(100.0)	2,881(65.7)
	제3기	1,665(100.0)	675(40.5)
	소계	6,140(100.0)	3,632(59.2)
덴마크	제1기	57(100.0)	49(86.0)
	제2기	2,974(100.0)	2,053(69.0)
	제3기	920(100.0)	367(39.9)
	소계	3,951(100.0)	2,469(62.5)
벨기에	제1기	167(100.0)	134(80.2)
	제2기	3,063(100.0)	1,881(61.4)
	제3기	13(100.0)	6(46.2)
	소계	3,243(100.0)	2,021(62.3)
독일	제1기	1(100.0)	1(100.0)
	제2기	1,905(100.0)	1,177(61.8)
	제3기	11(100.0)	4(36.4)
	소계	1,917(100.0)	1,182(61.7)
룩셈	제1기	-	-
	제2기	131(100.0)	82(62.6)
	제3기	396(100.0)	174(43.9)
	소계	527(100.0)	256(48.6)
이탈리아	제1기	39(100.0)	34(87.2)
	제2기	368(100.0)	226(61.4)
	제3기	-	-
	소계	407(100.0)	260(63.9)
기타	제1기	215(100.0)	167(77.7)
	제2기	74(100.0)	50(67.6)
	제3기	6(100.0)	1(16.7)
	소계	295(100.0)	218(73.9)

주: 기타 국가는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임.
 자료: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

~3세(56.5%)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4~6세(31.6%), 6세 이상(10.9%) 그리고 1세 미만(0.9%)의 순이다. 제2기에는 1세~3세의 비율이 46.7%로 그 비율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중차체는 가장 높다. 그러나 제1기의 경우에 그 비율이 가장 낮았던 1세 미만의 비율이 25.0%로 급격하게 높아진 반면에 4~6세는 19.5%로, 그리고 6세 이상은 8.8%로 낮아졌다. 그리고 제3기는 1세 미만이 72.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1세~3세는 25.1%, 4~6세는 1.8%, 마지막으로 6세 이상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다. 이러한 특성은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에 시작되었고 제1기의 경우에는 전쟁고아 및 기아가 입양대상아의 중심이기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의 비중이 크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낮은 연령층, 특히 1세 미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림 5).

한국입양아의 입양대상국 입양자의 절대수가 매우 적은 스위스, 독일 그리고 벨기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제1기와 제2기에는 1~3세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제2기부터는 1세 미만의 비중이

표 4. 유럽 내 국가별·시기별 한국입양아의 연령별 추이

(단위: 명%)

구분	계	1세 미만	1세~3세	4세~6세	6세 이상	
프랑스	제1기	83(100.0)	1(1.2)	31(37.3)	30(36.1)	21(25.3)
	제2기	9,763(100.0)	1,998(20.5)	3,908(40.0)	2,470(25.3)	1,387(14.2)
	제3기	1,096(100.0)	642(58.6)	375(34.2)	51(4.7)	28(2.6)
	소계	10,942(100.0)	2,641(24.1)	4,314(39.4)	2,551(23.3)	1,436(13.1)
노르웨이	제1기	87(100.0)	2(2.3)	61(70.1)	18(20.7)	6(6.9)
	제2기	4,393(100.0)	1,585(36.1)	2,270(51.7)	462(10.5)	76(1.7)
	제3기	1,666(100.0)	1,326(79.6)	321(19.3)	14(0.8)	5(0.3)
	소계	6,146(100.0)	2,913(47.4)	2,652(43.2)	494(8.0)	87(1.4)
덴마크	제1기	57(100.0)	2(3.5)	39(68.4)	12(21.1)	4(7.0)
	제2기	2,980(100.0)	1,116(37.4)	1,556(52.2)	219(7.3)	89(3.0)
	제3기	920(100.0)	669(72.7)	240(26.1)	7(0.8)	4(0.4)
	소계	3,957(100.0)	1,787(45.2)	1,835(46.4)	238(6.0)	97(2.5)
벨기에	제1기	167(100.0)	-	79(47.3)	72(43.1)	16(9.6)
	제2기	3,063(100.0)	560(18.3)	1,430(46.7)	772(25.2)	301(9.8)
	제3기	13(100.0)	1(7.7)	12(92.3)	-	-
	소계	3,243(100.0)	561(17.3)	1,521(46.9)	844(26.0)	317(9.8)
독일	제1기	1(100.0)	-	1(100.0)	-	-
	제2기	1,904(100.0)	320(16.8)	1,038(54.5)	410(21.5)	136(7.1)
	제3기	11(100.0)	1(9.1)	6(54.5)	2(18.2)	2(18.2)
	소계	1,916(100.0)	321(16.8)	1,045(54.5)	412(21.5)	138(7.2)
룩셈	제1기	-	-	-	-	-
	제2기	131(100.0)	58(44.3)	52(39.7)	15(11.5)	6(4.6)
	제3기	396(100.0)	324(81.8)	71(17.9)	1(0.3)	-
	소계	527(100.0)	382(72.5)	123(23.3)	16(3.0)	6(1.1)
이탈리아	제1기	39(100.0)	-	35(89.7)	4(10.3)	-
	제2기	373(100.0)	22(5.9)	289(77.5)	60(16.1)	2(0.5)
	제3기	-	-	-	-	-
	소계	412(100.0)	22(5.3)	324(78.6)	64(15.5)	2(0.5)
기타	제1기	215(100.0)	1(0.5)	121(56.3)	69(32.1)	24(11.2)
	제2기	74(100.0)	3(4.1)	49(66.2)	12(16.2)	10(13.5)
	제3기	6(100.0)	-	5(83.3)	-	1(16.7)
	소계	295(100.0)	4(1.4)	175(59.3)	81(27.5)	35(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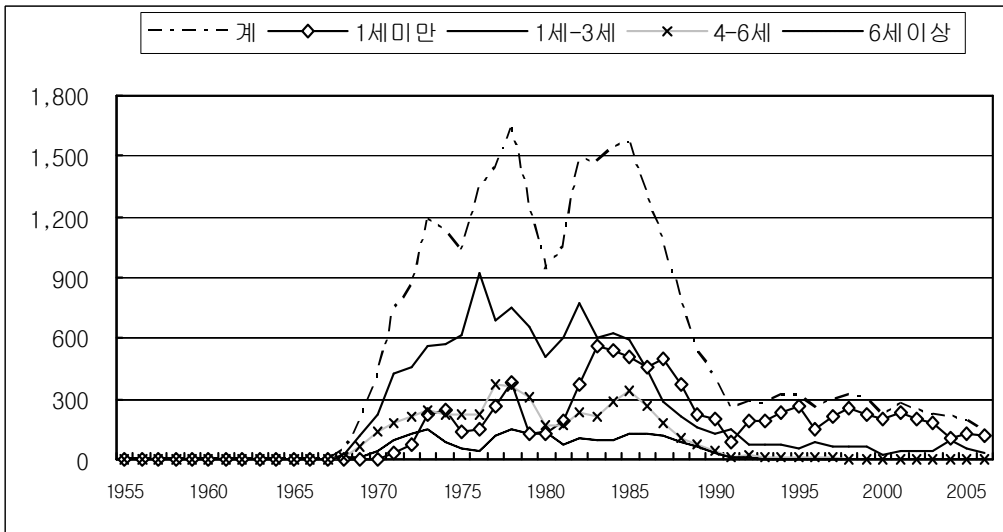
주: 기타 국가는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아이슬란드임.
 자료: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

크게 증가하여 제3기에는 1세 미만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전체적으로 유럽국가로의 입양아동의 연령은 1세 미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1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가 7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르웨이(47.4%), 덴마크(45.2%), 프랑스(24.1%)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입양아의 배경¹⁾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0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는 미혼모의 자녀가 1,087명으로 87.9%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은 결

혼가정의 자녀가 140명(11.3%), 영세가정의 자녀가 8명 그리고 기아가 2명이다. 즉 제3기에는 제1기와 제2기와는 달리 전쟁고아나 기아가 아닌 미혼모나 결혼가정의 자녀가 주된 입양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그림 6).

한국입양아의 배경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노르웨이가 미혼모의 자녀가 88.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결혼가정 자녀가 15.8%를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는 미혼모의 자녀가 88.8%, 결혼가정 자녀가 11.2%이며, 프랑스는 미혼모의 자녀가 86.4%,



자료: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

그림 5. 유럽에 입양된 한국입양아의 연령별 추이



자료: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

그림 6.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의 배경

결혼가정의 자녀가 11.4%, 영세가정의 자녀가 1.9%, 그리고 기아는 1명이다. 룩셈부르크는 미혼모의 자녀가 87.8%, 결혼가정의 자녀가 11.5%, 영세가정의 자녀가 1명이다.

이상의 해외입양아의 성비, 연령 그리고 배경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입양대상아의 성격은 해외입양아의 송출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의 주된 원인은 개방된 성문화와 높아진 이혼율로 사회적 기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대한 심한 사회적 편견과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을 국내에서 입양을 꺼려하는 전통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부재 등 사회제도적 환경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유럽 내 국가별 한국입양아의 배경

(단위: 명, %)

구분	계	미혼모	결혼가정	영세가정	기아	
노르웨이	2000	72(100.0)	65(90.3)	7(9.7)	-	-
	2001	97(100.0)	87(89.7)	10(10.3)	-	-
	2002	78(100.0)	69(88.5)	6(7.7)	2(2.6)	1(1.3)
	2003	72(100.0)	64(88.9)	8(11.1)	-	-
	2004	77(100.0)	65(84.4)	12(15.6)	-	-
	2005	76(100.0)	68(89.5)	8(10.5)	-	-
	2006	57(100.0)	48(84.2)	9(15.8)	-	-
	소계	529(100.0)	466(88.1)	60(11.3)	2(0.4)	1(0.2)
덴마크	2000	45(100.0)	41(91.1)	4(8.9)	-	-
	2001	54(100.0)	48(88.9)	6(11.1)	-	-
	2002	30(100.0)	26(86.7)	4(13.3)	-	-
	2003	50(100.0)	44(88.0)	6(12.0)	-	-
	2004	48(100.0)	45(93.8)	3(6.3)	-	-
	2005	46(100.0)	40(87.0)	6(13.0)	-	-
	2006	40(100.0)	34(85.0)	6(15.0)	-	-
	소계	313(100.0)	278(88.8)	35(11.2)	-	-
프랑스	2000	28(100.0)	28(100.0)	-	-	-
	2001	44(100.0)	39(88.6)	4(9.1)	1(2.3)	-
	2002	53(100.0)	43(81.1)	9(17.0)	-	1(1.9)
	2003	47(100.0)	41(87.2)	6(12.8)	-	-
	2004	37(100.0)	35(94.6)	1(2.7)	1(2.7)	-
	2005	39(100.0)	28(71.8)	8(20.5)	3(7.7)	-
	2006	16(100.0)	14(87.5)	2(12.5)	-	-
	소계	264(100.0)	228(86.4)	30(11.4)	5(1.9)	1(0.4)
룩셈	2000	12(100.0)	11(91.7)	1(8.3)	-	-
	2001	13(100.0)	12(92.3)	-	1(7.7)	-
	2002	13(100.0)	12(92.3)	1(7.7)	-	-
	2003	24(100.0)	22(91.7)	2(8.3)	-	-
	2004	22(100.0)	21(95.5)	1(4.5)	-	-
	2005	23(100.0)	18(78.3)	5(21.7)	-	-
	2006	24(100.0)	19(79.2)	5(20.8)	-	-
	소계	131(100.0)	115(87.8)	15(11.5)	1(0.8)	-

자료: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

5. 맺음말

해외입양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고아와 미아에 대한 구제책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입양아를 보내는 국가이었고 현재에도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주요한 연구대상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해외입양에 대한 연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도 대부분 입양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전망과 입양아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해외입양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의 연구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입양의 제도적 환경과 한국 해외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제도는 1961년에 제정된 고아입양 특별법이 최초이다. 이를 기초로 1976년 12월에는 「입양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입양(알선)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이다.

강제이주의 한 형태인 해외입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입양기관은 입양되기 전까지 입양대상아의 보호자 역할과 입양아 프로그램과 입양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입양대상자의 입양부모를 결정하고 입양대상자를 인도하는 과정과 입양후서비스에도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대상국 입양기관의 입양과정에서의 역할은 사전조사, 예비신청, 정식신청, 가정조사, 입양아조회, 그리고 입양후서비스이다.

유럽의 해외입양 정책은 1995년에 체결된 헤이그협정에 근거하고 있다. 핵심은 협정에 비준한 국가는 입양 대상국이나 송출국 모두 일방적인 수단으로 해외입양을 규제할 수 없으며, 합의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해외입양아에 대한 조건은 국가마다 약간 상이하다. 그러나 한국입양아의 입양대상국 대부분은 체결된 헤이그협정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유럽으로의 한국 해외입양은 1956년 노르웨이로 3명이 입양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 1978년에 2,86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전체 해외입양아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유럽으로의 입양자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매년 300~400명이 유럽으로 입양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은 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였던 제1기(1956~70년),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가 중심인 제2기(1971~90년), 해외입양 중심에서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입양사업 개선계획' 정책을 실시한 이후, 미혼모 자녀가 주된 입양대상자인 제3기(1991년 이후)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분포의 각 시기별 특성으로는, 제1기에는 총 1,963명이 입양되었고, 주된 입양 대상 국가는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사회복지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부유럽 국가들이다. 제2기에는 북부유럽 외

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서부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수가 급속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대상국가도 1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제3기에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입양아의 절대 수는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스위스, 영국, 이태리의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 벨기에와 독일도 1990년대 이후에는 입양아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한국의 입양아를 받아들였던 북부유럽 국가와 프랑스는 현재까지도 절대 수에 있어서는 감소하였지만 일정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전체 11개국 중에서 가장 늦은 1983년에 처음으로 입양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의 성격으로는 먼저 성별구성은 제1기와 제2기에는 여성의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제3기에는 성비가 역전되었다. 이는 1980년대 까지 즉 전쟁고아나 기아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고아가 주류를 이루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여아가 해외입양의 주된 대상자였지만, 그 이후에는 미혼모의 자녀가 해외입양대상자의 주류가 되었으며, 남아선호사상도 많이 약해진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연령별 구조는 제1기에 1세~3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4~6세, 6세 이상 그리고 1세 미만의 순이었으나 제2기에는 1세~3세의 비율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중자체는 가장 크다. 그러나 낮은 연령층, 특히 1세 미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입양아의 배경을 보면 제3기에는 그 이전과는 달리 전쟁고아나 기아가 아닌 미혼모나 결손가정의 자녀가 중심이다. 즉 입양상아의 성격은 해외입양아의 송출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의 대가족제도의 기능약화와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많은 미혼모의 발생, 그리고 늘어난 이혼 등으로 결손가정의 자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대한 심한 사회적 편견과 혈연관계가 없는 국내입양을 꺼려하는 전통적인 가치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부재가 해외입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증가로 인한 결혼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불임률의 상승으로 인해 입양수요가 늘어남으로써 한국과 유럽 간의 해외입양의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해외입양자의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입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해외입양을 중지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 국가의 내부요소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국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Peter selman, 2000). 심지어 Sarri et al(1998)은 “해외입양이 한국에서 적절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오히려 저해요소가 되었다”라는 호평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謝辭

본 논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된 여건 하에서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준 덕택에 완성될 수 있었다. 이에 홀트아동복지회에 깊이 감사한다. 또한 이 논문을 꼼꼼하게 읽고 여러 가지 수정사항을 지적해준 심사위원들에게도 감사한다.

註

- 1) 입양아들의 배경에 관한 자료는 1999이전의 자료는 파악이 불가능하여, 2000년 이후의 자료에 한정하였다.

文獻

박순호, 1995, 미국 내 한국 입양아의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30(4), 411-428.
 박순호, 1998, 미국 내 한국입양아의 실태와 입양행태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 10, 211-236.
 박순호, 1998, 한국 입양아의 미국 내 입양의 사회·제도적 환경-한·미 양국 간의 입양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18, 76-92.
 박인선, 1994, 해외입양인의 뿌리 찾기에 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각 년도.
 원영희, 1990,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준우 외, 1994, 입양제도의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재외동포재단, 2006, *국의 입양인 백서*, 서울.
 전경수, 1995, *한국문화론*, 일지사, 서울.
 정성덕, 1997, 한국아동의 해외입양실태 및 한국과 스웨덴아동의 연령추정을 위한 Demirjian 방법의 적용,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남순, 1986, *국내 및 국외 입양제도의 문제점 고찰*,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90, 121-146.
 허남순, 1984, *성년 해외입양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미국가정에서 한국계 입양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83, 83-101.
 홀트아동복지회 내부자료.
 Altstein, Howard and Rita. J, Simon, 1991, *Intercountry Adoption*, Praeger, New York.
 Baik, Sarri R. and Bombyk, M. 1998, Goal displacement and dependency in South Korea-United States intercountry adoption,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20(1), 87-114.
 Benet, Mary Kathleen, 1976, *The Politics of Adoption*, The Free Press, New York.
 Duncan. W, 1993, The Hagu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doption and Fostering*, 17(3), 9-13.
 Feigelman, William and Silverman, Arnold R, 1983, *Chosen Children: New Patterns of Adoptive Relationships*, Praeger, New York.
 Park, Soon Ho, 1994, *Forced Child Migration: Korean-Born Intercountry Adoptees in the United Stat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Hawaii, Manoa.
 Selman, Peter, 2000, *Intercountry Adoption: Developments, Trends and Perspectives*, BAAF, London.
 Selman, Peter, 1998, Intercountry adoption in Europe after the Hague Convention, in Sykes, Rob and Alcock, Pete (eds.), *Development in*

- European social policy*, The Policy Press, Bristol, 147-169.
- Textor, Martin R., 1991, International adoption in West Germany: a Private affair, in Altstein, Howard and Simon, Rita J. (eds.), *Intercountry Adoption: A Multinational Perspective*, Praeger, New York, 109-126.
- Van Loon, H., 1990, *Report on Intercountry Adoption*, The Hague Conference, Hague.
- Weil, Richard H., 1984, International adoption: the quiet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8, 276-293.
- Whang, Minsun Sung, 1976, *An Exploratory Descriptive Study of Intercountry Adoption of Korea Children with Known Parents*, Unpublished M.S. Thesis,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Hawaii, Manoa.
- <http://www.okf.or.kr>(재외동포재단)
- <http://www.holt.or.kr>(홀트아동복지회)
-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 (접수 : 2007. 11. 20, 채택 : 2007. 12. 7)